별첨 3

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6. 1.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현행 채무조정 시스템 ····· 3

1. 채무불이행의 영향 ····· 3
2. 현행 개인워크아웃 제도 ····· 5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9

Ⅲ.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 10

Ⅳ.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방안 ····· 11

1. 연체 이전 단계 ····· 12
2. 연체 이후 단계 ····· 13
3. 수요자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21

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지원방안 ····· 23

1. 채무조정 약정체결 유도 ····· 23
2. 공적 채무조정 연계 강화 ····· 24

Ⅵ. 향후 추진계획 ····· 25

Ⅰ. 추진배경

□ 그간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 **신복위 설립**('02.10월) 후, 금융권 협약에 기반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15.11월까지 **총 127만명의 상환부담을 경감**

○ '13.3월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일회적인 채무조정 지원**('15.11월까지 총 46.5만명) **강화**

➡ 이러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는 '15년말 현재 **약 103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 참고 1)

* ('06년;만명) 280 → ('09년) 193 → ('12년) 124 → ('13년) 108 → ('14년) 108 → ('15년) 103

□ 다만,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

❶ **저신용층의 전체 대출규모는 축소***되는 가운데, **고금리대출**(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체)** 및 **다중채무 비중은 오히려 확대**

* 全금융권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비중(%) : ('13년) 11.5 → ('14년) 10.1 → ('15.6월) 9.5

** 저신용자 채무 중 고금리대출 비중(%) : ('13년) 25 → ('14년) 27 → ('15.6월) 27.9

❷ 채무자의 재기에 보다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 예시; 신복위 워크아웃의 경우 가용소득 등 상환능력과 연계하여 지원폭이 결정되기 보다는 획일적으로 최대 원금 감면율(50%)이 적용되는 경향

❸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탄력적 채무조정**을 통해 **추심부담 완화,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

☞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현행 채무조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편 추진**

참고 1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통계

◇ '15년말 **채무불이행자는 약 103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나, **법률대리인의 적극적 영업활동** 등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 신청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

1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은행연합회; 연체 3개월 이상 기준)

(단위 : 만명)

	'03년	'06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금융채무불이행자	372.0	279.6	193.4	151.4	126.2	124.3	*108.1*	*108.1*	*103.1*
신규등록(A)	212.4	41.9	32.3	25.8	30.5	36.8	*36.7*	*34.3*	*28.2*
해 제(B)	103.8	59.8	66.1	67.8	55.7	38.7	52.9	34.3	33.1
순증감(A-B)	108.6	△18	△33.8	△42	△25.2	△1.9	△16.2	0.03	△4.9

2 공·사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11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0.7	1.4	1.8	2.0	1.5	1.4
	워크아웃	7.7	7.7	7.2	7.7	7.0	7.0
법원	개인파산	8.5	7.0	6.2	5.7	5.6	4.8
	개인회생	4.7	6.5	9.0	*10.6*	*11.1*	*9.2*
합 계		21.6	22.6	24.2	*26.0*	*25.2*	*22.4*

3 공공정보(개인회생·파산) 등록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11
개인파산	등록현황	41.4	40.3	34.3	26.8	23.2	22.0
	신규건수	6.3	4.8	4.5	3.7	4.5	4.4
	해지건수	1.6	6.0	10.5	11.2	8.0	5.6
개인회생	등록현황	15.9	15.2	15.3	*17.0*	*19.9*	*23.3*
	신규건수	3.4	3.2	4.3	*5.5*	*7.0*	*7.0*
	해지건수	2.5	3.9	4.2	3.9	4.1	3.6

Ⅱ. 현행 채무조정 시스템

1 채무불이행의 영향

□1 **(채무자) 연체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어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상환 독촉 및 가압류·강제경매 등의 회수절차 진행**

❶ 채무 연체로 **단기**(5일 이상)·**장기**(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록**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규대출·카드발급** 등이 제한

* 단기 연체정보의 경우 연체기간·금액·횟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 연체정보 발생시에는 통상 8등급 이하로 신용등급 대폭 하락

❷ **채권자**로부터 (i) **상환 독촉**, 담보 보강, 임의변제·대물변제 요청, 상계 등 **임의적 채권회수 조치** 뿐만 아니라,

- (ii) 재산·급여 등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근저당권 등 설정시), 강제경매(법원 판결 要) 등 **법적 회수조치**도 받을 수 있음

□2 **(금융회사)** 연체발생 채권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건전성·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❶ **은행권**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고정 또는 회수의문**(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년 이상** 연체시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규정*

*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상환능력·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하나, **개인 여신은 연체기간만으로 건전성 분류** 허용(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❷ 자산건전성 하락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자기자본비율**(BIS)**에도 악영향**

* (**은행**)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저축은행·여전사**)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신협**)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필요

참고 2 채무불이행의 영향 (그림)

◇ 연체 발생시, 통상 ❶ **상환 독촉** → ❷ **장기 연체정보 등록**(3개월) → ❸ **가압류·경매·지급소송 등 회수** → ❹ **매각·대손상각·채무조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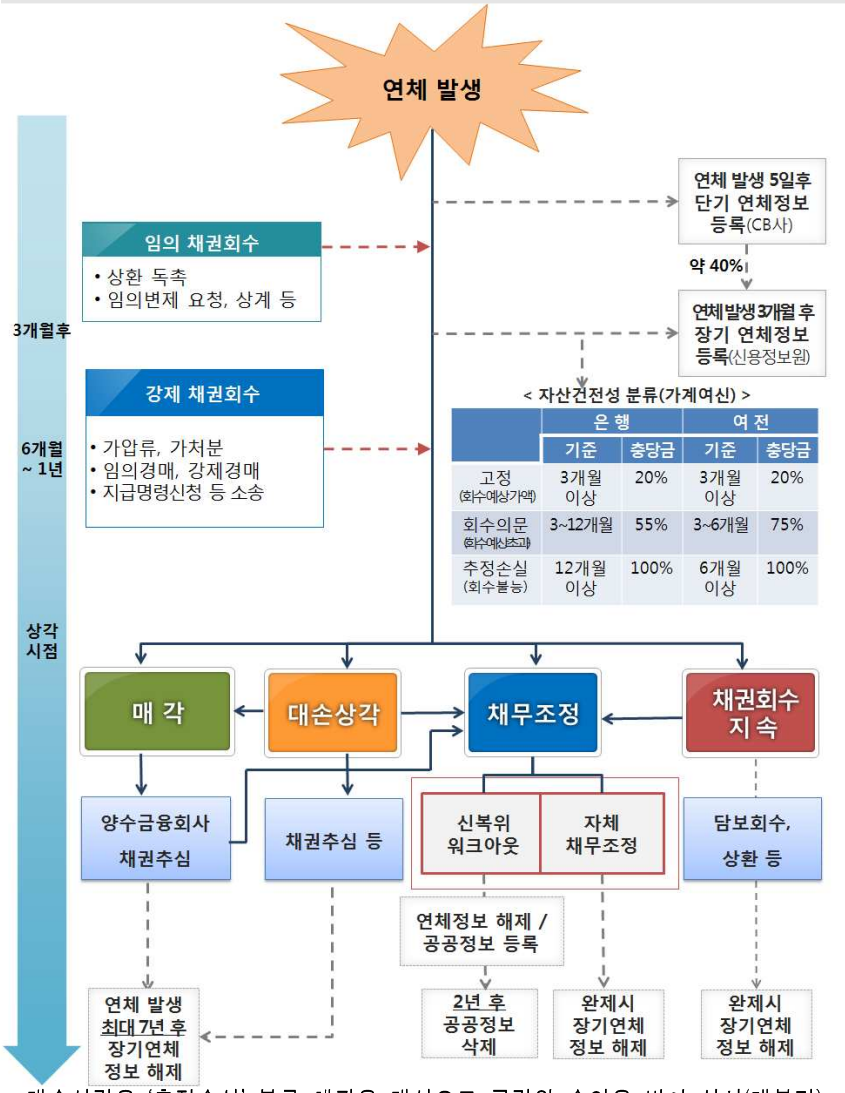

* 대손상각은 '추정손실' 분류 채권을 대상으로 금감원 승인을 받아 실시(매분기)
** CB사는 단기·장기 연체정보 해제 후 신용평가를 위해 각각 3년·5년간 추가 활용 가능

2 현행 개인워크아웃 제도

◇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❶ 채무자는 능력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❷ 금융회사는 건전성·수익성 제고 가능 (→ 상호 Win-Win 관계 구축)

가.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 단기연체자 위주로 자체 관리

1 (프리워크아웃)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

* 기존 대출의 **원금 감면없이**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 **(지원실적)** '12년 **은행권 제도 도입** 이후, '15.6월까지 **총 69.9만명**(대출원금 약 44.8조원)에 대해 **분할상환 등 지원 실시**

*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13.5월)' 등과 연계하여,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약 44만건, 약 64%)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활성화

○ **(건전성 분류)** **'요주의'**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정상'**으로 분류 허용(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10%→1%)

2 (워크아웃) **연체가 장기화**된 **'상각채권'**을 대상으로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회수가능성 평가**를 거쳐 **원리금 감면 등 지원**

※ 상각 이전 단계(연체 1년 미만)에서는 우선 채권회수에 집중하는 경향

○ **(지원실적)** '12년~'15.6월 중 **16개 시중은행**은 **총 12.6만명**에 대해 **약 5,600억원의 원금 감면*** 등을 지원

* 조기 채권회수를 위해 일시(단기 분할)상환을 전제로 한 원리금 감면이 일반적

○ **(손익 영향)** **상각채권***을 **일부 회수**할 경우, 해당 부문만큼은 **은행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당기손익에 긍정적 영향**

* 난외계정에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 → 매분기 회수실적 금감원장 보고

나. 신복위 워크아웃 : 금융권 협업을 통한 다중채무자 지원

□ **(개관)** 현재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다중채무자**(무담보채권 총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등 지원

❶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청 전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으로 요건 한정

-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상환유예(최대 1년), **이자율 조정**(당초 이자율의 50%까지) 등 지원

❷ **(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부채상환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

- **원금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가능**하나,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매입한 채권**은 **최대 30%***까지만 가능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전, '신용회복기금' 등 종전 AMC가 채무조정시 적용한 최대 감면율이 30%라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기준

※ 다만,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감면

- 그 외에 **이자 전액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최대 8년), **상환유예**(최대 2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부담 경감 지원**

※ 신복위 워크아웃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감면율**(50%)**을 적용**하는 경향

□ **(지원실적)** '02년 신복위 설립 이후, **총 127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모**

* (워크아웃) '02년부터 총 117.9만명 / (프리워크아웃) '09년 도입 후 총 8.7만명

□ (**채무자 지원**) 워크아웃 개시로 **채권회수가 중단**되고,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성실상환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채권자**가 신복위로부터 **워크아웃 신청을 통보**(신청 후 1주일내) 받으면, **채무자**(보증인 포함)에 대한 **채권행사가 일체 금지**

○ **채무조정 확정**시, 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

* 이후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로 등록되나, 2년간 성실상환시 동 정보도 삭제되므로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이 조기에 해소

○ 상환기간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금 상환유예❶, 채무조정 부활제도❷** 등 지원

❶ (원금 상환유예) 실직, 질병, 긴급비용 발생 등의 경우 최장 2년 원금 상환유예

❷ (채무조정 효력 부활) 채무자가 미납 상환금의 1/3 이상을 납부하고, 과반수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종전 채무조정의 효력이 부활

○ 아울러,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소액대출**(9개월 이상, 최대 1.5천만원), **미소금융·햇살론 지원**(1년 이상), **소액신용카드 발급**(2년 이상)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 병행**

□ (**금융회사 특례**) 금융회사가 신복위 워크아웃에 적극 참여토록 **자산건전성 분류 특례**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 중

○ (**프리워크아웃**) '**요주의**(연체 3개월 미만)' 채권에 대해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정상**'으로 분류 인정(대손충당금 적립; 10%→1%)

○ (**워크아웃**)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이후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정**(2년 이상), **요주의**(4년 이상), **정상**(요주의 변경 후 1년 이상)**으로 건전성 상향 조정** 허용

※ 아울러,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어 당기 손익에도 긍정적인 효과

참고 3 개인워크아웃 지원 현황

1. 금융회사(은행권) 자체 워크아웃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6월	합 계
프리워크아웃[1]	인원	15.5	21.1	21.1	11.2	**69.9**
	대상채권	103,830	126,310	138,937	79,526	448,603
워크아웃[2]	인원	4.2	3.8	2.8	1.8	**12.6**
	금액 (원금감면액)	1,740	1,900	1,168	800	**5,608**

1)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이 활성화 (약 44만건, 약 64% 비중)

2) 16개 시중은행의 자료를 집계(은행연합회)

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무조정 확정 기준)

(단위 : 만명, 조원)

구 분		'03~'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11월	합계
프리워크아웃	인원	-	0.6	0.5	1.2	1.7	2.0	1.4	1.3	**8.7**
	금액	-	0.2	0.2	0.3	0.4	0.6	0.4	0.4	**2.5**
워크아웃	인원	71.7	8.1	6.7	6.7	6.4	6.6	6.0	5.7	**117.9**
	금액	23.9	2.7	2.6	2.8	2.4	2.5	2.4	2.4	**41.7**
합 계	인원	**71.7**	**8.7**	**7.2**	**7.9**	**8.1**	**8.6**	**7.4**	**7.0**	**126.6**
	금액	**23.9**	**2.9**	**2.8**	**3.1**	**2.8**	**3.1**	**2.8**	**2.8**	**44.2**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한시적·일회적 채무조정 지원

□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이관** 및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 채무자를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 체결, 법원 파산연계** 등을 추진

□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 후, 채무자가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15.11월까지 **총 46.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완료

○ (**원리금 감면**)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30~50%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 신복위에 준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

○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복위**에 준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한 **자활·재기 지원**

-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최장 2년), **약정 부활제도*** 등 시행

* 연체이자 및 1회차 분할상환금 납입시 기존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 부활

□ (**채무조정 미약정자**)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안내**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는 **채무상환 유예, 파산 연계** 등 실시

○ (**채무상환 유예**) 기초수급자 채권 중 **재산·소득심사**(3년 단위 재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채무상환 유예** 지원

○ (**법원 채무조정 연계**)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 개인회생·파산**으로 **연계**

* 지방법원(서울, 부산 등),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Fast-Track 지원 중

Ⅲ.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 **취약계층의 자활·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1 (**연체 前 단계**) 현행 채무조정 지원은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

○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취약·서민층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

* 예시; 대출연체 → 신용등급 하락 → 금융회사의 대출회수 조치 등 →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 다중채무 불이행 우려 증가

2 (**연체 後 단계**) 상환능력에 부합한 지원, 연체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해 **평가·지원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운용할 필요**

○ 채무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시**, 연령·연체기간·거래내역 등 **다양한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

○ 워크아웃이 **상각채권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체가 장기화**(예; 1년 이상)되고 **채무자의 추심 부담도 지속**되는 문제점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상환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 채무조정**을 통해 **자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

○ 특히, **법원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함에도, **비용부담**으로 절차 추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도 제기

4 (**이용자 접근성·편의성 강화**) 채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

* 특히, 과중채무자는 채권추심 회피를 위한 연락두절 등이 빈번하므로 **연체 발생 초기에 지원제도 안내, 종합신용상담** 등이 매우 긴요

Ⅳ.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1 연체 발생 자체가 최소화 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2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연체 상태**를 조기에 해소

3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 확대** 등을 통해 **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4 채무자 대상 **제도안내 및 종합신용상담 등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법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

< 연체 기간에 따른 세부 개선방안(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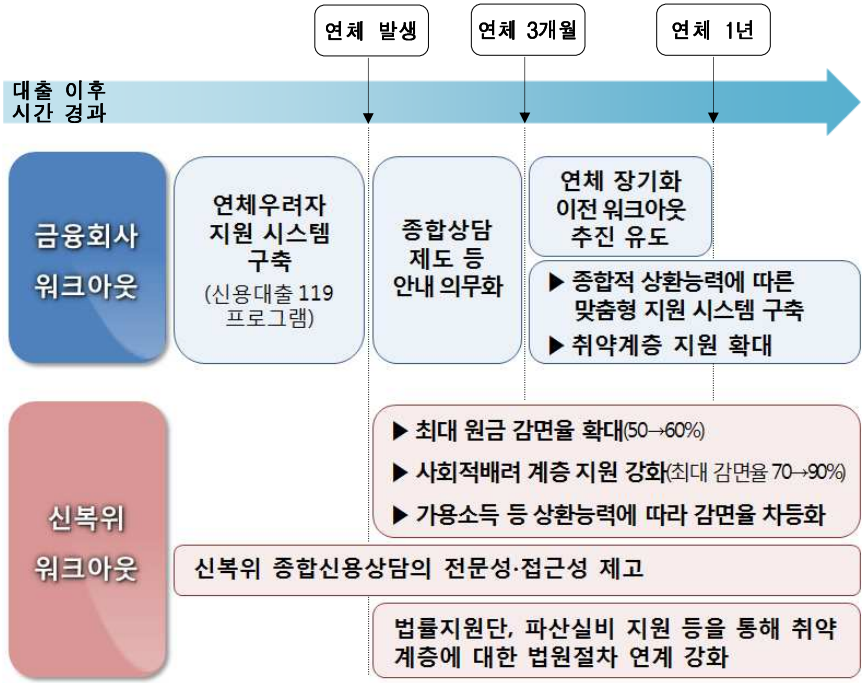

1 연체 이전 단계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 **(연체 우려자 지원) 은행권 공동으로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객관리 여력이 있는 **은행권부터 우선 시작**하되, 추후 도입성과 등을 보아가며 타 업권으로 확대 검토

❶ **(지원대상)** 가계 신용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 고객으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연체 우려 예상)**를 희망**하는 고객

-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은행권 공통 선정기준***을 마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은행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규 반영**

* 예시; 대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여타 금융회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채무관리 희망 고객** 등에 대해 **1:1 상담**을 통한 **지원 필요성·세부방안 등을 파악**

❷ **(안내시기)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하여 **"먼저" 상담·지원 프로그램 안내**

❸ **(지원방법)**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방식 변경, 이자유예, 분할상환기간**(또는 거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도 안내·지원**

➡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시 매년 약 5.3만명의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지원 절차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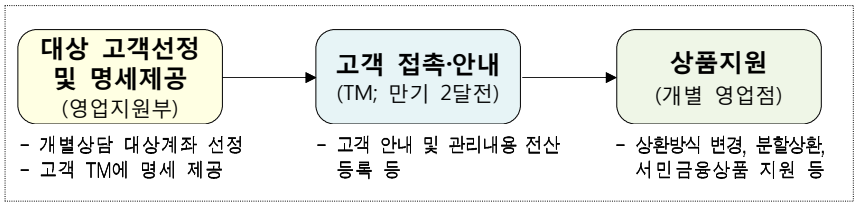

2 연체 이후 단계 :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 금융권(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 워크아웃이 채무자의 **실질 상환능력을 내실있게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원체계 개편**

1 **(맞춤형 지원 강화)** 채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원방법**(원금 감면율 등)**을 결정**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현행] 대부분 은행·저축은행은 **상각채권 편입기간, 회수가능 재산존재 여부 등 단편적 지표**를 기준으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중

❶ **(평가지표)** 소득·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채무자의 여건**(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 건수), **연체채권 특성**(연체기간, 채권액) 등 **최소한 5개의 지표를 상환능력 평가시 고려**

* 은행·저축은행별 여건에 따라 지표별 반영비중 조정, 추가 지표 편입 등 가능

❷ **(평가방법)** **5개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채무자의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계량화**

- 채무자의 **연령이 높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도 있는 경우 → 소득창출 여력·부채구조 등을 고려하여 **낮은 점수 부여**

❸ **(지원방법)** 최종적으로 점수화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수준** 등을 결정

* 예시; 5~50%의 원금 감면율 범위내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감면율 적용

- 아울러,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분할상환**(최대 5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예시; 채무조정 후 12개월 이상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채무잔액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상환자에 대하여 채무원금의 5% 내에서 추가 감면 부여 검토

참고 4 맞춤형 지원 시스템 적용 (예시)

◇ 향후 **은행·저축은행별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공유 등을 거쳐 **개별·구체적 시스템 구축** 추진

※ 저축은행은 운용 여력이 있는 **대형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채무자)** **A씨**(40세)는 **B은행에서** (i) **1,500만원을 2년간 연체**하였으며, (ii) B은행에서의 **정상거래 기간은 4년**이고 (iii) 타기관 연체 등으로 **신용관리정보가 2건 등재**된 상황

□ **(상환능력 평가)** B은행 내규에 따라 **5개 지표별 점수 합산** 결과, **A씨의 상환능력은 최종적으로 73점**(100점 한도)으로 평가

< 상환능력 평가기준표(예시) >

구 분	배점	반영기준					평가점수
연 령	25	~30세	~40세	~59세	60세~		22
		○○	*22*	○○	○○		
연체기간	20	~1년	~3년	3년~			16
		○○	*16*	○○			
신용관리 대상정보	20	無	1건	2~3건	4~6건	7건~	12
		○○	○○	*12*	○○	○○	
연체규모	20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16
		○○	○○	*16*	○○		
정상거래 기간	15	~1년	~3년	~5년	~10년	10년~	7
		○○	○○	*7*	○○	○○	
합 계	100						**73**

□ **(지원방법)** B은행은 **상환능력별 지원기준**에 따라 **A씨 원리금 24%를 감면**하고, **5년간 분할상환**토록 지원

< 채무조정 지원 기준표(예시) >

점 수	원리금 감면범위
60점 이상~70점 미만	원리금 25%~30% 이내 및 이자
70점 이상~80점 미만	원리금 20%~25% 이내 및 이자
80점 이상~90점 미만	원리금 15%~20% 이내 및 이자

2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상환여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채무조정 실시**

※ [현행] 일부 은행에서만 취약계층 기준·지원방법 등을 별도로 고려

○ (**대상**) 현재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하여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으로 설정

* 신복위 워크아웃시 일반 채무자(최대 50%) 대비 우대 감면율(최대 70%) 적용대상

○ (**지원방법**) 일반채무자 대비 **추가 원금 감면율**(예시; +20%) **적용*** 등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부담 경감폭을 확대**

* 은행·저축은행 워크아웃 추진시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일반 채무자 50%) 수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3 (**조기 워크아웃 유도**) **자산건전성 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각채권 분류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행] 프리워크아웃(요주의 채권)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시 '정상' 분류 허용 / 상각채권은 워크아웃 이후 일부 회수시 수익성 제고 유인 존재

○ (**배경**) '**회수의문**' **채권**의 경우, 건전성·수익성 제고 유인이 없어 **금융회사가 워크아웃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

- "**연체 이후 3개월~상각채권 분류**(통상 6개월~1년)" 사이의 기간 중 **채무조정 지원**에 **사실상 공백이 발생**(연체 장기화)

○ (**개선사항**) **회수의문 채권**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을 거쳐 **성실 변제시, 자산건전성을 단계적으로 상향 분류**토록 허용*

* 예시; 신복위 워크아웃에 준하여, 고정이하 채권을 (i) **고정**(2년 or 전체 상환기간의 1/4 이상 성실상환시) → (ii) **요주의**(4년 or 전체 상환기간의 1/3 이상 성실상환시) → (iii) **정상**(요주의 변경 후 1년 이상 성실상환시)으로 상향 분류

➡ **은행·저축은행에 대해 부실채권 비율 하락,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 조기 워크아웃 추진 유인 제공**

나. 신복위 워크아웃

◇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최대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상환능력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 강화**

1 (**탄력적 지원체계 구축**) **획일적으로 50% 원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현행과 달리,

○ 가용소득을 감안한 **상환능력과 연계하여 감면율을 차등화**하되,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

❶ (**月가용소득**) 채무자의 月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출**

* 생계비 = 부양가족수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 150% 수준

❷ (**원금감면율**) **채무원금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상환지수 = 채무원금/가용소득)을 **상환능력의 지표**로 보아, **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

*

	채무원금 小	채무원금 大
가용소득 大	낮은 원금 감면율(최소 30%)	원금 감면율 30%~60%
가용소득 小	원금 감면율 30%~60%	높은 원금 감면율(최대 60%)

2 (**매입채권 처리개선**)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 등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현재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탄력적 감면율**(30% ~ 60%) **적용**

○ **매입채권**이 합리적 근거없이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아 제기되는 **채권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

* 신복위 전체 채권 중 매입채권은 약 45%('15.9월) 수준을 차지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생활여건 안정 지원**

※ [현행]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감면율을 70%까지 적용 중

○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며, **채무원금이 소액**(예시; 총 1천만원 이하)인 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 **(지원방법)**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 **매년 약 3천명에 대해 최대 약 200억원의 원금감면 지원 예상**

4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소멸시효 도과 채권은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현행] 채무자가 시효완성 채권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에 동의**시 **'채무의 승인'**이 되어 **채권의 시효가 부활되는 문제점 발생 우려**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 판단**(금융회사 - 신복위간 확인시스템 구축)

5 **(채무조정 심사강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성실상환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강구**

※ [현행] 신복위 워크아웃 신청시 채무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

❶ **(심사강화) 추가 심사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력·수준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

* 건강보험 가입 형태·시기에 따라 소득구분(근로자·자영업자), 객관적인 소득수준, 취업이력 등을 확인 가능(→ 햇살론 등 여타 서민금융 신청시 제출)

❷ **(성실상환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후 실직·질병 등으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부담을 추가 경감***

* (현행)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연 2% 유예이자 납입 → (개선) 성실상환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1% 유예이자 납입 / 48개월 초과시 유예이자 면제

참고 5 탄력적 지원체계 운용 예시

◇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산정**하되, **30%~60%의 탄력적인 감면율 적용시 효과 분석**

□ **채무원금**(상각채권)**은 3,300만원**으로 동일하나, **가용소득**은 각각 **36만원**(C씨), **46만원**(D씨)으로 다른 경우

1 **(개선 前)** 가용소득과 별개로 **획일적인 50%의 감면율 적용시**

❶ **(C씨)**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총 상환기간 46개월**(1,650/36)

❷ **(D씨)**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총 상환기간 36개월**(1,650/46)

2 **(개선 後)** 가용소득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감면율을 60%까지 확대시**

※ 차등화된 감면율 = 30% + (변제 소요기간 - 36개월) X 0.5

❶ **(C씨) 상환지수가 92**(3,300/36) → **감면율 58%** 적용

- 감면 후 **채무원금 1,386만원, 총 상환기간 39개월**(1,386/36)

❷ **(D씨) 상환지수가 72**(3,300/46) → **감면율 48%** 적용

- 감면 후 **채무원금 1,716만원, 총 상환기간 38개월**(1,716/46)

< C씨: 月가용소득 36만원 >

	현 행	개선 후
채무원금/가용소득	상환지수 92 (3,300 / 36)	
감면율	50%	58%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1,386만원
총상환기간	46개월 (1,650 / 36)	39개월 (1,386 / 36)

→ 원금 감면율 **8%p 증가**
상환기간 **7개월 단축**

< D씨: 月가용소득 46만원 >

	현 행	개선 후
채무원금/가용소득	상환지수 72 (3,300 / 46)	
감면율	50%	48%
감면 후 채무원금	1,650만원	1,716만원
총상환기간	36개월 (1,650 / 46)	38개월 (1,716 / 46)

→ 원금 감면율 **2%p** 감소
상환기간 **2개월 연장**

참고 6 신복위 제도개선에 따른 전반적 효과(시뮬레이션)

◇ '14년 신복위 채무조정자 기준, **최대 원금 감면율 확대**(50% → 60%), **매입채권 동일 감면율 적용**(최대 30% → 60%), **상환지수를 반영한 채무조정**시,

➡ **1인당 추가 원금 감면 증가액**은 **약 90만원 수준**(평균 원금액 2,096만원)으로 예상

1 (**적용 前**) '14년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자**는 **약 6만명**이며, **대상 채권의 원금**은 **총 1.24조원 규모**

➡ 실제 채무조정 이후 **원금 감면액은 약 2,500억원, 미상각 채권을 포함*한 전체 원금 감면율**은 **약 20%**로 나타남

* 채무자가 신복위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상각채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체 채권(미상각채권 포함)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됨

2 (**적용 後**) '14년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탄력적인 차등 감면율**' 적용시, **원금 감면액은 약 530억원 증가**(1인당 약 90만원 수준)하고 **전체 감면율은 약 4.5% 상승**

➡ 채무자간 **원금 감면 수준이 탄력적으로 재조정**되는 효과

<탄력적인 차등 감면율 적용시 전체 감면액·감면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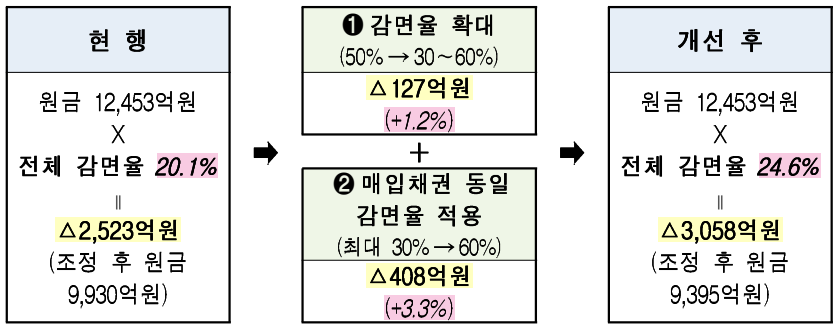

참고 7 既 추진 중인 신복위 제도 개선사항

◇ **보다 신속하고 중립적인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대부업체 참여 의무화, 관련 절차 법제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 중**(「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사항)

1 (**신복위 법정 기구화**) **효과적·중립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복위의 법적근거 마련**(특수법인化)

○ 특히, 최고 의사결정 기구(사업수립, 협약개정 등)인 **신복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채무자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

* 위원장, 진흥원 부원장+은행연·생보·손보·여전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상호금융 회장(6人) + 소비자단체 근무 경력자, 소비자 분야 전공자, 변호사 등(7人)

2 (**대부업체 등의 참여 확대**) 신속·원활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

* 대부업체(금융위 등록대상), 새마을금고·신협 등 **약 500여개 기관**의 추가 협약 가입 예상(현재 협약 가입기관 3,656개 → 약 4,200개 수준으로 확대)

※ 아울러, 다른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연체 3개월 미만 대부채권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으로 포함 추진(현재는 대부업체 협약가입 유도를 위해 제외)

3 (**워크아웃 절차 법제화**) 「**통합도산법**」의 영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절차·방법·효력 등을 법률로 규율**

○ 채무조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채무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등 **현행 세부절차*를 명문화**

* 최종 의결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할 경우, 채무조정안에 대한 효력 발생(합의 성립) 등을 명시

4 (**정보요청권 부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건보·세무서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 유형별 관리·지원 강화** 추진

3 수요자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채무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관련 "안내·상담·연계"를 활성화**

1 (**지원 제도 안내**) **연체 발생**시 채무자에게 **종합신용상담,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가 채무연체자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 연체정보 등록시점**(연체 후 3개월) 전에,

- **채무자**에게 불이익 정보 뿐만 아니라, **신복위 지원정보**(종합신용상담, 연락처 등) 등을 **함께 통지**토록 의무화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통지의무 부과

2 (**신용상담 내실화**) 채무자가 **편리하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복위 종합신용상담의 전문성·접근성을 제고**

❶ (전문성) **상담분야 확대, 최적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보다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

(i) **현행 상담영역**(워크아웃·소액금융·취업 등)을 **公私 채무조정, 부채관리, 서민금융상품, 복지연계** 등으로 확대

* 상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복위 직급별 필수·전문·선택과목 등으로 연수과목을 세분하고,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병행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ii) 채무자의 **연령·직업·채무액·연체기간** 등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등 **최적의 채무조정 제도를 자동 안내**하는 **'맞춤형 진단모형' 개발·활용**

➡ **신복위가 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사전적 부채관리, 법원의 회생·파산절차 상담을 포괄하는 '종합 신용상담 채널'로 기능**

❷ (접근성) 수요자가 **쉽게 내방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를 대폭 확충**(현재 약 80개소 → '16년 중 **추가 50개소 이상*** 설치)

* 신복위 추가 지점(2개소), 고용·복지+센터 등에 종합상담센터('16년 중 약 50개소) 등을 개소하고, 종합신용상담 인력 대폭 증원(예; 30명) 등 추진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하여, 개별 상담센터를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로 전환 추진**

3 (**취약계층 연계 강화**) 채무조정 신청자 중 **"가용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 내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절차와 연계 활성화**

※ [현행] 신복위 신용상담을 거친 채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통해 **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Fast-Track** 실시 중(서울·부산·광주)

❶ 신복위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Fast-Track 미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법원 회생·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연계·진행**

-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부터 서류작성, 신청, 보정서 작성** 등 **절차 진행을 원스톱으로 지원**(법률구조공단 역할 대행)

* 신복위 종합상담 결과 법원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법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

❷ 특히,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보수** 등 **추가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 인지대·송달료(약 15~20만원), 파산관재인 보수(약 30만원) 등

- 아울러, 직접적 소송비용 외에 **거동 불편** 등으로 **필요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류발급대행수수료**(최대 5만원)도 지원

※ 취약계층 파산실비 등 지원은 **'16년 중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추후 도입성과 등을 보아가며 확대 실시 검토

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지원방안

◇ 소득·재산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채무자별 맞춤형 관리 강화**

* **개정 캠코법 시행**('15.9.28일)으로 캠코가 국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재산·과세정보 관련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

1 채무조정 약정체결 유도 : 맞춤형·탄력적 지원 강화

가. 채무조정 안내 강화

□ **(현행)** 미약정자에 대해 **채무조정 안내 DM·SMS 등을 일괄 발송**하고 있으나, **약정 체결을 유도하기 어려운 여건**

○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열악** 등으로 **채무조정 신청 의사가 크지 않고**, 채무조정 안내를 채권추심으로 인식하는 경향

➡ **(개선방안)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

○ 채무자별 **예상 원금 감면율, 月 상환금액, 채무조정 약정시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

나. 탄력적인 채무조정 강화

□ **(현행)**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환능력 파악이 쉽지 않고**, 채무조정 이후 변제를 시작하더라도 **상환부담으로 중도 탈락할 우려**

* 아울러, 신복위에 준하여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70%**의 상향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해도 **최대 감면율이 50%로 제한**

➡ **(개선방안)**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정밀한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원금 감면율도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지원**을 실시

❶ **원금 감면율**을 신복위와 동일하게 **30%~60%로 적용**하여, 채무자별 경제적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 실시**

❷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채무부담을 대폭 완화**

- 국가 등으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며, **채무원금이 소액**(예시; 총 1천만원 이하)인 채무자 등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❸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月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체증방식***' 등 **다양한 방안 지원 검토**

* 예시; 月상환금을 현행 균등방식에서 체증방식으로 개선(초기 3년간 10%, 나머지 7년간 90% 상환 등)하여 초기 상환부담 경감 등

2 공적 채무조정 연계 강화 : 법률지원단 설치 등

□ **(현행)** 채무자가 법원 파산절차 진행 등을 위해서는 행복기금 방문 이후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상황

○ 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절차진행 접수율이 낮으며**, 연계 이후 실제 법원의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

➡ **(개선방안)** 국민행복기금이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 강화**

❶ 법률지원단이 **심층상담, 법원 신청 등의 절차를 전담**하여 채무자의 **중도 신청포기를 예방**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 이용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

❷ 아울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 법원에서 변호사 및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

Ⅵ. 향후 추진계획

□1 별도의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 **금융권 워크아웃 제도개선 방안** 등은 **가급적 '16년 상반기 내 신속하게 마무리**

○ 특히, 수요자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안내·상담·연계" 강화방안은 가급적 1/4분기 중 조속히 추진**

□2 **신복위 워크아웃 개편방안**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3/4분기까지 탄력적으로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과 제	주 체	시 기
개인 워크아웃	□1 연체 이전 단계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은행연, 금융위/금감원	'16.上
	□2 연체 이후 단계	■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❶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금감원	'16.上
		❷ 취약계층 지원 확대		'16.1/4
		❸ 조기 워크아웃 추진 유도		
		■ 신복위 워크아웃		
		❶ 탄력적 지원체계 구축	신복위,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등	'16.3/4
		❷ 매입채권 처리개선		'16.3/4
		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16.1/4
		❹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개선		'16.1/4
		❺ 채무조정 심사강화 등		'16.1/4
	□3 수요자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 신복위 상담 등 지원제도 안내 의무화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등	'16.1/4
		■ 종합신용상담 전문성·접근성 제고		
		❶ 상담분야 확대, 최적 안내시스템 구축	신복위, 금융위/금감원	'16.上
		❷ 현장 상담센터 대폭 확충		연 중
		■ 취약계층 법원절차 연계 활성화	신복위	'16.1/4
국민 행복 기금	□1 채무조정 약정 체결 유도	❶ 채무조정 안내 강화	국민행복기금	'16.上
		❷ 탄력적인 감면율 적용 등		'16.上
	□2 공적 채무조정 연계 강화	❶ 법률지원단 설치 등		'16.1/4